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

제정 2008. 07. 15. 개정 2023. 02. 06. 개정 2024. 02. 05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럭비협회(이하 '협회') 정관 제4조(사업)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. <개정 2023. 2. 6>

제2조(적용범위) 협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하는 국내 대회에 적용하며,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와 전국(소년)체육대회는 주최 측의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3. 2. 6>

제3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 적용할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신설 2023. 2. 6>

- 1. '주최'라 함은 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단체를 말한다.
- 2. '주관'이라 함은 주최단체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3. '후원'이라 함은 대회에 필요한 재정, 시설, 물자, 인력 등을 지원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4. '시도 럭비협회'(이하 '시도협회')라 함은 협회 정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단체를 말한다.
- 5. '전국대회'라 함은 대한체육회 및 협회가 승인한 전국규모의 대회를 말한다.
- 6. '지역대회'라 함은 전국대회를 제외한 각 시·도 협회 소속 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.
- 7. '인정대회'라 함은 전국대회 및 지방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나 협회 대회위원회에서 행정상 사유로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.
- 8. '신규대회'라 함은 신설하는 대회를 말한다.
- 9. '기존대회'라 함은 연간 사업계획을 통해 1회 이상 개최된 대회를 말한다. <개정 2024. 2. 5>

제4조(대회의 주최 및 주관) ① 전국대회는 정관 제4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서 주최하며, 개최지역 시도협회에 대회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역대회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시도협회가 주최 및 주관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2. 6>

제2장 대회 유치 및 승인

제5조(대회유치 신청) ① 대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(이하'지자체') 및 시도협회는 대회 유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대회 유치신청서 제출 시기는 제6조제1항을 따른다.

- ② 대회 유치 신청서<별지 제1호서식>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대회 개최 및 유치 목적
- 2. 참가대상, 대회기간, 장소, 개최기관(주최, 주관, 후원) 등
- 3. 개최지 해당 지자체 유치 동의서<별지 제2호서식>
- 4. 대회 운영 계획서(조직위 편성, 시설, 안전, 홍보, 예산편성 등)<별지 제3호서식> <신설 2023. 2. 6>

제6조(대회신청 기한) ① 신규대회의 경우, 대회 개최 전년도 9월까지, 기존대회의 경우는 대회 개최 전년도 10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지역대회의 경우는 대회 개최 전년도 12월까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 수시로 유치신청을 받는다.

<개정 2023. 2. 6, 개정 2024. 2. 5>

제7조(개최지 결정) ① 기존대회의 유치를 신청한 경우, 대회위원회에서 대회유치 신청내용을 심의한 후,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

- ② 신규 대회의 유치를 신청한 경우,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한 후, 대회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이사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필요시 대회위원회는 유치를 신청한 지역에 대한 사전 답사를 할 수 있다.
- ④ 대회유치 신청을 한 기관(단체)이 없거나 대회유치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, 대회위원회는 대회의 성격, 참가팀의 여건, 경기장 환경,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회 개최지를 선정하며,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
- ⑤ 개최지 결정 후 대회를 취소하거나 대회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대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3년간 대회유치 신청을 할 수 없다. <신설 2023. 2. 6>

제8조(대회 취소 및 계획 변경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이사회에 보고하여 대회를 취소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- 1. 대회준비가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를 취소해야 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2. 대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3. 유치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<개정 2023. 2. 6>

제9조(대회유치 지원금) ① 대회유치가 결정된 지자체는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협회가 지정한 계좌로 유치지원금을 입금시켜야 한다.

- ② 협회는 대회유치 지원금 중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주관단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.
- ③ 주관단체는 대회 종료 후 2주 이내 대회유치 지원금 사용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2. 6>

제3장 대회 운영

제10조(대회운영 절차) 대회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2. 6>

- 1. 개최지 결정 : 전년도 12월 한
- 2. 대회 운영계획 수립 및 하달 : 대회 개최 2개월 전
- 3. 대회 참가 신청 : 대회 개최 4주 전
- 4. 대표자 회의 및 대진 추첨 : 대회 개최 2주 전
- 5. 경기장 준비 및 점검 : 대회 1일 전
- 6. 대회 결과 종합 및 보고 : 대회 종료 후 2주 이내

제11조(대회 구분) 대회는 참가대상에 따라 남·여 팀을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종별과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23. 2. 6, 개정 2024. 2. 5>

1. 15세 이하부

2. 18세 이하부

3. 대학부

4. 일반부

5. 대학일반부

6. 동호인부

제12조(대회 방식) 대회의 방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택한다. <개정 2023. 2. 6>

- 1. 토너먼트
- 2. 리그
- 3. 리그 및 토너먼트 혼합

제13조(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임무) ① 대회 조직위원회는 협회와 주관단체가 협의하여 지휘부, 경기부, 심판부, 지원부 등으로 구성한다.

- ② 지휘부는 협회와 주관단체를 대표하는 인원으로 편성하며, 대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.
- ③ 경기부는 협회의 대회위원회 위원과 주관단체에서 선정한 인원 등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, 필요시 추가로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.
- 1. 경기운영 총괄
- 2. 대회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및 운영
- 3. 대회규정, 경기규칙 검토
- 4. 대표자 회의 준비 및 주관
- 5. 경기장 및 경기시설 준비
- 6. 팀, 선수 신분 확인
- 7. 경기진행 및 경기장 질서 유지
- 8. 경기전 국민의례 및 시상식 진행
- 9. 경기 기록유지 및 분석, 결과 유지
- 10. 경기보조요원, 의료지원인원 확보 및 통제
- 11. 기타 경기 및 행사 진행에 관련된 사항
- ④ 심판부는 협회의 심판위원회 위원과 상임심판, 일반심판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, 필요시 추가로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.
- 1. 심판배정 및 통제
- 2. 심판관련 시설, 장비, 물자 준비
- 3. 팀 및 선수 출전 확인
- 4. 심판결과 분석 및 결과 유지
- 5. 심판판정 이의신청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
- ⑤ 지원부는 협회 및 주관단체 인원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, 필요시 추가로 인원을 운영할 수 있다.
- 1. 전반적인 대회 계획 수립 및 지원
- 2. 조직위 인원 편성 및 지원
- 3. 숙박 및 식사, 주차 지원
- 4. 안전 및 방역계획 수립 및 지원
- 5. 방송 및 대회 홍보
- 6. 예산 집행 및 결산
- 7. 기타 대회 지원관련 부여된 임무수행
- ⑥ 대회조직위원회에 편성된 인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가용예산 범위내 여비를

지급[별표 1]할 수 있으며, 경기운영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[별표2][별표3] <신설 2023. 2. 6, 개정 2024. 2. 5>

제14조(경기진행 및 의료지원요원)

- ① 주관단체 요청시, 경기부는 대회위원회, 심판부는 심판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는 주관단체에서 부담한다.
- ② 경기보조요원과 의료지원요원은 주관단체에서 경기부와 협조하여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2. 6>

제15조(질서대책위원회 운영) ①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5조 제7항에 따라 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를 위해 질서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. ② 위원장은 부대회장, 위원은 경기부원과 심판부원 등으로 구성하며,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. <신설 2023. 2. 6>

- 제16조(퇴장자처리) 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0조 제7항에 따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며 대회기간 동안 퇴장자처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, 위원은 지휘부, 경기부, 심판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휘부 중 회장이 지명한다.
- ② <삭제 2024.00.00.>
- ③ 퇴장선수에 대한 심의절차와 벌칙기준은 아래 각 호에 따르며, 사안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- 1. 악의적인 행위에 의한 퇴장명령 3경기 출전정지
 - 2.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퇴장명령 2경기 출전정지
 - 3. 이외 경고누적 퇴장을 포함하여 경기규칙 위반이나 파울플레이에 의한 퇴장명령 1경기 출전정지
 - 4. 당해년 동일선수가 동일한 사유로 퇴장 재발생 시 상정기준의 2배 이내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.
 - 5. 해당선수와 지도자는 퇴장선수처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 - 6. 퇴장선수 처리 심의결과는 심의 후 결과를 당사자 및 해당팀에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 - 7.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 및 해당팀은 서면으로 24시간 이내 혹은 해당팀 다음 경기 3시간 전 중 빠른 시간까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항소가 받아드려졌을 경우에도 징계의 경감은 최초 징계에서 최대 1경기로 한정한다.
- 8. 퇴장선수에 대해 협회가 정한 특별교육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퇴장선수에 대한 출전정지의 효력 범위는 국내대회로 한정하며 대한체육회, 협회 주최·주관대회로 한다. 종합대회 평가전 및 시도럭비협회 주최 대회는 출전정지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 <개정 2024. 2. 5>
- ⑤ 출전정지는 진학 등으로 인한 소속팀 변경 및 당해연도 대회가 종료되어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은 계속된다. <신설 2023. 2. 6, 개정 2024. 2. 5>
- ⑥ 주심은 플레잉 인클로저(Playing enclosure는 경기구역과 경기운영구역을 포함한다)내 인원에게 퇴장이나 교체를 명령할 수 있고, 예비심(벤치관리자)은 테크니컬 에어리어 내 인원의 퇴장이나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2.5>
- ⑦ 지도자가 퇴장명령을 받았을 경우 경기장(관중석 포함) 밖으로 완전히 떠나야 하며, 그 이후 팀에 대한 지도(유, 무선 포함)를 할 수 없다. 퇴장명령을 받은 지도자는 해당경기와 다음 1경기에 참가할 수 없으며, 추가적인 대회 참가 제한 조치는 질서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필요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. <신설 2024. 2. 5>

제17조(경기장) ① 경기장은 국제럭비위원회 경기규칙 및 규정에 따라야 하며, 천연 잔디 경기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주관단체는 경기장 및 연습장을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.
- ③ 경기장은 경기 개시일 7일 전부터 대회 개최와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며, 부득이한 경우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2. 6>

제18조(경기시간) 종별 경기시간은 다음의 기준으로 대회요강 및 규정에서 정하며, 필요시 일출·몰, 날씨, 경기장 상태, 참가팀 여건, 경기진행,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경기부에서 대회장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- ① 15인제
 - 1. 18세 이하 부 : 전·후반 각 30분, 중간휴식 15분 이내
 - 2. 대학부 : 전·후반 30분 ~ 40분, 중간휴식 15분 이내
 - 3. 대학일반부, 일반부 : 전·후반 각 40분 이내, 중간휴식 15분 이내
 - 4. 동호인부 : 전·후반 25분 ~ 35분, 중간휴식 15분 이내
- ② 12인제(15세 이하 부) : 전·후반 각 20분 이내, 중간휴식 15분 이내
- ③ 7인제 : 전·후반 7분, 중간휴식 2분이내
- ④ 터치럭비 및 태그럭비: 대회 여건 고려 <개정 2023. 2. 6, 개정 2024. 2. 5>

제19조(경기장 부대시설) 주관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기장 부대시설이 사전에 구비

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① 경기 중 팀 지도자와 대기 선수들이 앉을 수 있도록 팀별 벤치를 설치해야 한다.
- ② 경기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경기진행실, 의료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TMO, 심판대기실에 의자와 무전기 충전용 전원을 구비해야한다.
- ④ 경기장 전체가 잘 보이는 곳에 대회본부석, 방송실을 설치해야 한다.
- ⑤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방송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.
- ⑥ 2개 회선 이상의 유선인터넷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. <개정 2023. 2. 6>
- ⑦ 주관단체는 협회 및 주최단체가 설정한 대회 마케팅과 브랜딩 정책에 따라야 하며 광고판 및 현수막 제작·설치 의무를 갖는다. 주관단체 후원사 및 경기장 내 현수막 추가 설치는 협회 및 주최단체와 사전 협의한다. <신설 2024. 2. 5>

제20조(시설 점검) 주관단체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경기부와 협조하여 사전에 경기장 및 기타 시설을 점검하고, 미비점은 대회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2. 6>

제21조(예산 집행 및 결과 보고)

- ① 주관단체는 유치지원금, 기금 등 관련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② 협회는 주관단체에서 수립한 사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주관단체는 협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예산 사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주관단체는 예산사용계획에 의해 예산을 집행한 후 정산을 실시하며, 대회 종료 후 1개월 예산집행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2. 6>

제22조(숙박시설) ① 주관단체는 지휘부, 경기부, 심판부, 지원부 등 대회 관계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대회 관계자와 참가팀이 동일한 숙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회 관계자 숙소를 별도로 지정한다. <신설 2023. 2. 6>

제23조(안전대책) ① 선수단 및 심판은 응원단 및 관중과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고, 대회 본부석은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되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.

- ② 부상자 치료를 위해 해당 지역 병원을 사전에 협조하고, 구급차는 경기장 근처, 경기장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배치한다.
- ③ 의료지원요원은 경기장내 지정된 곳에서 대기하고, 들것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.
- ④ 감염병에 대비하여 경기장 방역대책을 구비한다. <신설 2023. 2. 6>

- 제24조(상업적 권리) ① 협회는 방송중계권, 광고 판매, 후원사 선정, 입장료 징수 등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 및 후원 기관(단체)은 상업적 권리문제에 대해 협회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③ 기타 상업적 권리 조정 등의 문제 발생시 협회가 결정권을 갖는다. <개정 2023. 2. 6>

제25조(보험가입) 주관단체는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스포츠안전재단의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2. 6>

제26조(대회 사용구) ① 대회 사용구는 협회의 승인을 받은 공인구를 사용한다. ② 협회 공인구는 공인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정한다. <개정 2023. 2. 6>

제27조(대회 홍보) 주최 및 주관단체는 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 대회 운영계획에 홍보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2. 6>

제28조(대회 결과보고) 주관단체는 대회 종료 후 2주 이내 대회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2. 6>

부 칙 (2023.2.6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2.5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서식>

대회 유치 신청서

대 회 명					
대회기간					
참가대상					
	시 도 명				
대희장소	경 기 장 명		(규격 :	\mathbf{M} ×	M)
네되ろエ	경기장 주소				
	관 람 석 수	명	주차대수		대
대회 개최 및 유치목적					
주최단체					
주관단체					
후원기관(단체)					
대회유치지원금					
· O_ 커 시 ঝ	기 관 명		담당부서		
유치신청 기관(단체)	대표자명		연 락 처		
714(479)	주 소				
즈과다체	단체명		대표자명		
주관단체 -	담당자		연 락 처		

상기와 같이 럭비대회를 유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 년 월 일

유치 신청기관 : (직인)

(사) 대한럭비협회 귀중

<별지 제2호서식>

대회 유치 동의서

○○ 럭비협회는 대한럭비협회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제00회 전국 ◇◇ 럭비 선수권 대회 유치를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.

- 아래 -

1. 대 회 명 : (예시) 제00회 전국 ◇◇ 럭비 선수권 대회

2. 대회장소 : (예시) ○○시 ◇◇운동장

3. 대회기간 : (예시) 202♦년 0월 0일 ~ 0월 0일

4. 유치기관 : (예시) ○○도 ◇◇시

202 년 월 일

유치신청 OO 시(도) (직인)

1. 대회명 :

2. 대회목적 :

3. 대회기간 :

4. 대회장소 :

퇴장선수처리심의위원회

5. 참가팀

대회 운영 계획서

-	1) 참가 대상 :						
2	2) 참가 예상팀 수 :						
3	3) 참가 예상인원 :						
	,						
6.	대회방식 : 여	l) 토너먼트, i	리그, 리그&토너먼트				
7	개최기관						
-	l) 주최 :						
2	2) 주관 :						
3	3) 후원 :						
	, ,						
8.	대회조직위 픽	변성 및 임무					
		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0] 🗆	0] 0]			
	구	분	임 무	인 원			
	대회장						
	지휘부 부대회장						
	경기부						
	심판부						
	지원부						
	질서대책위원회						

9. 시설 사용 계획

1) 구장 운영 계획

구 분	구장명	주 소	잔디관리	잔디관리상태		조명유무
十 正	Too	十 至	천연잔디 여부	상/중/하	좌석수	Ψ0πΤ
경기장						
연습구장 1						
연습구장 2						

- 2) 부대시설 운영(준비) 계획
 - 팀 벤치
 - 경기진행실
 - 의료대기실
 - TMO
 - 심판대기실
 - 대회본부석
 - 방송실
 - 인터넷 시설
 - 화장실
 - 관중석
 - 점수판 및 타임보드
 - 기타 편의시설 등
- 3) 숙박시설 운영 계획
 - 대회운영본부 숙소 배정
 - 심판 숙소 배정
 - 팀 숙소
- 4) 주차계획

10. 안전 대책

- 1) 의료지원 계획:
 - 의료인력 및 구급차 배치, 지정병원 선정
 - 기타 의료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계획
- 2) 혹서기/혹한기 대책
- 3) 일반 안전 대책

- 4) 경기장 안전(위험) 시설 점검 대책
- 5) 안전인력 운영 계획

11. 홍보 계획

- 1) 현수막 게첩
- 2) 언론홍보
- 3) 중계방송
- 4) 기타

12. 예산편성(안)

구 분		대회명:		
목	세목			
총계				
	소계			
	일반수용비	∘ 운영수당 000,000원x0일x0명=	00,000,000	
운영비	공공요금 및 제세	· 주최자책임배상보험	0,000,000	
	임차료	∘ 임차비용(책상,의자,음향시설 등)	0,000,000	
	소계			
업무 추진비	사업 추진비	◦회의비	0,000,000	
	소계			
여비	국내여비	∘ 숙박비 00,000원x00실x0일=	00,000,000	

13. 대회 규정 (*세부 규정 필요)

1. 경기장 배치도면(기록	록실 위치"※"표시)		
시도협회 구 분	성 명 전화(사무실)	핸드폰	기록실 위치에"※"표시
시도협회 구 분 담 당 시도럭비협회	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	<u> </u>	(※ 표시 불 가능시 서술설명)
2. 주경기장 내·외부 사	진		
	경기장 내부	<u></u> ·전경	
	경기장 외부	·전경	

※ 붙임

3. 연습	3. 연습경기장 내·외부 사진(2면 이상)			
	연습구장 내부전경			
	연습구장 외부전경			
_				

[별표 1] <개정 2024.02.05.> 국내대회 여비 지급표

여비	여비 체재비			
구분	일비	숙박비	식 비	비고
대회운영인력 (경기부, 심판부 등)	25,000	실비 (상한액: 특별시 100,000, 광역시 80,000, 그밖의지역 70,000)	25,000	

^{*} 일비란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택시요금 등 근거리교통비, 주차료,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

[별표 2]

대회운영 관련 수당 지급표

■ 대회운영 관련 수당 지급기준

- 상임심판의 경우는 심판일수 10일/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가능

구분		경기 수당(원)	비고
		중등부 70,000	
	주 심	고등부 80,000	
		대학일반부 100,000	1경기 지급비용
		중등부 30,000	(단, 경기수당최고금액은 15만원을
15인제	선 심	고등부 40,000	초과하지 않는다. 또한, 경기수당
		대학일반부 50,000	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
	예비심	20,000	경우는 5만원을 지급한다)
	비디오레프리	20,000	
	심판평가관	30,000	
7인제	주심/선심/예비심 비디오레프리/ 심판평가관	4시간 미만 50,000 4시간 이상 100,000	1일 지급비용
15인제	지휘부, 심판부장	100,000	1일 지급비용
/7인제	경기력평가관	80,000	T 된 시 H 비 장

[별표 3] <신설 2024.02.05.>

수당 지급 기준표

■ 대회운영 관련 수당 지급기준

- 상임심판의 경우는 심판일수 10일/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가능

구분		수당(원)	비고
메	치데이 닥터	300,000	- 국제대회
"	1 1 1 1 1 1	200,000	- Lv2 ICIR 이상
ę	<u></u>	300,000	- 국제대회
	통역요원	120,000	- 국제대회
	경기부	100,000	- 부장, 부원 수당
		, , , , , , ,	동일
메디컬 대	개니저 · 트레이너	100,000	
	운영요원	70,000	
	4시간 이하	200,000	
장내 아나운서	(15인제, KRU 주최 행사 등)	200,000	- 경기 1시간 전 소집
	4시간 이상	200,000	- 영어 가능자
	(7인제, AR 주최 행사 등)	300,000	